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튜닝 승인·검사 절차 간소화 등〉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3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튜닝 승인·검사 절차 간소화 등(안 제34조제4항·제5항 신설 등)	2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08.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튜닝 승인·검사 절차 간소화 등(안 제34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튜닝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자동차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이하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u>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u>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
-----승인절차,-----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의 승인 기준·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 등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¹⁾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고, 튜닝 후에는 현행 제43조제1항제3호²⁾에 따른 별도의 튜닝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튜닝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그런데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12.17., 이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라 함)에서 튜닝을 승인하는 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제34조제4항 신설)³⁾,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하고(제34조의2제3항 신설),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제34조의2제4항 신설)⁴⁾.

3)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12.17.)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12.17.)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특정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권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장치로 튜닝을 하면 별도의 승인 및 튜닝검사 없이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반면, 개정안은 **고령운전자**라는 특정 인적 범주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지원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예산 범위**’라는 재정적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도 고령운전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정책적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음.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삭제 2023.8.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예산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

구분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튜닝검사 생략·간소화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장치로 튜닝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4조제4항)	자동차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이하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안 제34조제4항)
튜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안 제34조제5항)

따라서 개정안의 목적인 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승인·검사 절차의 생략 및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튜닝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치에 대해 튜닝 이전에 안전성 확보를 확인한 경우 튜닝승인·검사를 면제하는 등 튜닝 절차를 완화하도록 旣개정하였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旣개정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75